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03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8. 12. 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8.자 취득세 18,038,690원, 지방교육세 1,518,960원, 농어촌특별세 759,480원의 부과처분, 2017. 3. 10.자 2015년분 재산세(건축물) 668,300원 및 지방교육세 85,680원, 2015년분 재산세(토지) 910,900원 및 지방교육세 134,950원의 부과처분, 2017. 4. 10.자 취득세 14,804,9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249,1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2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와 [redacted]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7. 30. [redacted]병원 본관 건물에 인접한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대 887.5㎡ 중 1/2 지분과 위 토지 위의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을지대학교병원 임상의학센터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5. 21. 위 건물을 철거한 후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그 위에 종합검진센터, 교수연구실 및 행정지원시설 등 의료시설을 신축한 다음 을지대학교 병원 본관과 연결할 목적으로 위 토지의 나머지 1/2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인 지하 1층에 있는 '지하 1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및 지상 1층에 있는 '101호, 1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위 토지 지분과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포함한 지상 1층 및 지하 1층 부분을 새로운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다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여 위 건물 지상 101호, 102호는 원고가 취득 후부터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지하 101호는 2015년경부터 있었던 을지대학교병원 본관 증축공사(이하 '본관 증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사 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장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가 2016. 12. 14. [redacted]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redacted]시장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01호, 102호는 의료비품창고로 사용하여 원고가 이를 교육 등 목적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사무실 중 54.159㎡ 부분(이하 '이 사건 감독상황실 부분'이라 한다)도 원고의 본관 증축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원고 직원이 직접 상주하였으므로 위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지방세는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사무실 중 본관 증축공사의 시공사 현장사무소로 제공한 581.135㎡ 부분(이하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목적사업이 아니라 시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는 과세처분에 관한 적부심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8.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18,038,690원, 지방교육세 1,518,960원, 농어촌특별세 759,480원을 추징하는 납세고지를 하였고, 2017. 4. 10. 종전 과세처분의 세액 결정 오류를 들어 추가로 위 감면된 취득세 14,804,9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249,1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24,5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납세고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3. 10.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2015년분 재산세 668,300원 및 지방교육세 85,68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이하 위에서 언급한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5. 10.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1. 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2, 3, 5, 7,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본관 증축공사의 시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 일부를 시공사 현장사무소로 제공한 것은 원고의 고유 목적 사업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본관 증축공사의 시공사에게 현장사무소를 제공한 것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종국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본관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만 한시적·잠정적으로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지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본문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2) 사립학교법 제28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참조), 학교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참조).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부터 6층까지를 임상의학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인접한 [redacted]병원 본관 건물과 연결하는 새로운 의료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나머지 건물 부분을 취득하였는데, 위 계획이 변경되면서 위와 같이 추가로 취득한 위 나머지 건물 부분을 당초 2층부터 6층에 있었던 의료용 시설과 병원 본관에서 사용되던 의료용 비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본관 증축공사가 시작되자 위 의료용 비품 창고로 사용되던 위 부분 중 이 사건 사무실을 비워서 일부는 시공사에게 현장사무소로 제공하고, 일부는 원고의 직원을 상주시켜 위 공사의 감독상황실로 사용하였다.

(3) 본관 증축공사가 끝난 이후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사무실을 종전에 사용하던 대로 의료용 비품 창고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이 '원고의 목적에 따른 용도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 중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이 본관 증축공사를 위한 시공사의 현장사무소로 사용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원고는 [redacted]와 [redacted]병원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므로, 이와 같은 학교의 교지, 체육장 또는 병원의 부지 또는 의료시설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목적에 따른 용도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은 원고의 목적 자체인 의료시설 등이 아니라 이러한 의료시설로 사용될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을 고유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함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을 고유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함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당초부터 본관 병원 건물과 연결하는 새로운 의료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 · 증축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실제 공사 시행을 위한 현장사무소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무실 중 일부를 시공사의 현장사무소로 제공한 행위가 당초 원고의 이 사건 사무실 등의 취득 목적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원고가 본관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본관 건물을 의료시설로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위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이 본관 증축공사를 위한 시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사의 현장사무소로 실제 사용된 이상,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이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유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본관 증축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가 증축공사 대상 건물이나 부지 자체가 아니라 다른 건물에 위치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본관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을 그 공사 시행을 위한 현장사무소로 제공하였는데,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3년 내에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을 의료시설 등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의 과세적부심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무실 중 감독상황실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사건 감독상황실 부분이나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은 모두 원고의 고유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의료시설 증축공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 사건 감독상황실 부분에는 원고의 직원이 상주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에는 원고의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차이가 앞서 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지방세 면제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세 면제 여부를 달리함을 정당화할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③ 설령 원고가 지방세 면제신청 당시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을 '의료용 비품창고'로 사용하였다가 그 이후 본관 증축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로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자는 직접 원고의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된 것이고, 후자는 원고의 고유 목적 사업 자체는 아니나 그 준비단계로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느 경우나 지방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이용 용도가 당초와 달라졌다 하여 지방세 면제 여부에 관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각 호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지방세 면제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2호가 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도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제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일부라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들어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제2호를 둔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3년간 '정당한 사유'로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그 기간 중 일부의 기간에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지방세 면제 여부를 달리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은 원고가 그 고유목적을 위한 준비과정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고유목적을 위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한 면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이유에서 같은 항 단서 제3호가 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현장사무소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각 호가 정한 지방세 면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성철

판사 차은주

판사 윤성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3)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1)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5항·제6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4,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 제1항**·제5항·제7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제1항, 제46조,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6조제3항·제4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항, 제73조의2,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